

#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

## 신청안내

**| 신청기한 |** ~ 2022. 9. 30.

**| 신청대상 |** 벽면이용 간판, 돌출 간판, 지주이용 간판, 옥상 간판

-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·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

**돌출간판**



**지주간판**



**벽면이용간판**



간판종류	허가	신고
벽면이용간판	가로길이 10m 이상	면적 5㎡ 이상이거나 4층 이상
돌출간판	면적 1㎡ 이상	면적 1㎡ 미만
지주간판	높이 4m 이상	높이 4m 미만
옥상간판	전체	-

※ 3층 이하의 5㎡이하 벽면이용간판의 경우 허가(신고) 없이 설치 가능

**| 신청자 |** 광고주(업주) 또는 옥외광고사업자

**| 접수처 |**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, 읍면 개발담당

**| 구비서류 |**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활용(<https://www.geochang.go.kr/>)

- 신청(안전점검)서,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, 원색사진

**| 수수료 |** 허가(신고) 수수료는 간판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다르며,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

**| 문의처 |** •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940-3582

- 거창읍 940-7313
- 주상면 940-7382
- 웅양면 940-7432
- 고제면 940-7482
- 북상면 940-7532
- 위천면 940-7582
- 마리면 940-7632
- 남상면 940-7682
- 남하면 940-7782
- 신원면 940-7782
- 가조면 940-7832
- 가북면 940-7882